

## 사단법인한국예총대전광역시연합회임원선거공고

사)한국예총대전광역시연합회 조직 및 운영규정과 사)한국예총대전광역시연합회임원선거관리규정에의거 제11대 임원선거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선거일시 : 2019. 2. 22 (금요일) 15:00
2. 장 소 : 대전광역시중구문화원 뿌리홀
3. 대의원구성 : 50명(회원단체별 대의원 각 5명)
4. 임원선출
  - 가. 선출임원 : 연합회장1, 수석부회장1, 부회장3, 감사2
  - 나. 총회대의원명단제출 : 2019. 2. 1. 18:00까지
  - 다. 회장입후보등록 : 2019. 2. 7. 13:00 ~ 17:00까지  
접수처 : 한국예총대전광역시연합회사무처(예술가의집)
  - 라. 기호추첨 : 2019. 2. 7.18:00(입후보자간 협의 조정)
  - 마. 입후보자등록구비서류
    - 1) 후보등록신청서(소정양식:붙임1) : 1부
    - 2) 소속단체장 추천서(소정양식:붙임2) : 1부
    - 3) 이력서 : 1부
    - 4) 후보자사진 : 명함판 : 1매
    - 5) 주민등록등본 : 1부
    - 6) 공탁금 : 5,000,000원 예치증명  
(대전예총선관위통장: KEB하나은행628 910096 31505 )
    - 7) 서약서(소정양식:붙임3) : 1부
    - 8) 대의원 송부용 후보자 공보제출 : 2019. 2. 11. 17:00까지
      - 가) 규격 : 선거공보 길이27cm 너비19cm 4면 이내 4도 컬러
      - 나) 수량 : 120부
      - 다) 필수기재내용 : 기호, 성명, 생년월일, 직업, 학력, 경력, 상벌, 공약사항
      - 라) 공보물제작비 보전 : 500,000원

2019년 1월 22일

사)한국예총대전광역시연합회임원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붙임1: 후보등록신청서

## 입후보 등록신청서

1. 인적사항

성명	소속협회 직위	생년월일 년령	주소	직업	학력	전화 휴대폰
한글						
한자						

2. 한국예총대전광역시연합회 임원선거관리규정 제15조제1항에 따라 사단법인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대전광역시연합회 제11대 연합회장선거에 입후보자로 등록 신청합니다.

※ 첨부

- 1) 협회정회원확인증1매
- 2) 소속단체장 추천서(소정양식:붙임2) : 1부
- 3) 이력서 : 1부
- 4) 후보자사진 : 명함판 : 1매
- 5) 주민등록등본(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표기) : 1부
- 6) 공탁금 : 500만원 예치증명(대전예총선거관리운영통장: 628 910096 31505 )
- 7) 서약서(소정양식:붙임3) : 1부

2019 년 2 월 일

신청인 후보자 (인)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대전광역시연합회

제11대임원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귀하

## 후보 등록추천서

1. 인적사항

성명	소속협회 직위	생년월일 년령	주소
한글 한자	정회원		

2. 한국예총대전광역시연합회 임원선거관리규정 제17조제1항에 따라 사단법인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대전광역시연합회 제11대 연합회장 선거 입후보자 등록 추천합니다.

2019 년 2 월 일

추천인 사)한국0000 000 대전광역시지회장 (인)  
직전총회 1/5이상 대의원추천

연번	소속협회	성명	서명
1			
2			
3			
4			
5			
6			
7			
8			
9			
10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대전광역시연합회

제11대임원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귀 하

## 서 약 서

2019년 2월 22일 실시하는 제11대 사단법인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대전광역시연합회장 선거에 출마하는 본인은 이 선거가 지역예술문화를 대표하는 지도자를 선출하는 선거로서 그 권위를 지키고 투명성을 담보하는 공명선거가 될 수 있도록 선거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서약한다.

- 다 음 -

1. 상대후보에 대하여 허위사실을 공표하거나 비방 또는 모함하지 않는다.
2. 선거와 관련하여 일체의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받지 않는다.
3. 선거와 관련하여 금품, 향응 등을 요구하거나 알선하는 행위를 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즉시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한다.
4. 상기 제1호 및 제2호의 사항을 위반할 경우 공직선거법의 관련 규정을 적용한 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5. 선거결과에 승복하고 향후 당선자에게 협력한다.
6. 입후보자는 임원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을 준수한다.
7. 공보물 필수 기재사항을 누락하거나 허위사실을 기재한 때에는 당선을 무효로 한다

본인은 제11대 사단법인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대전광역시연합회 회장 선거와 관련하여 상기 조항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경우 당해 선거관리위원회 및 한국예총본부의 조치에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19년 2월 일

서약자

(인)

사단  
법인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대전광역시연합회  
제11대임원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귀하

# 임원선거관리규정

제정 : 1995. 1. 25  
개정 : 2011. 3. 16.  
개정 : 2014. 11. 21.  
개정 : 2017. 7. 10.  
개정 : 2019. 1. 14.

## 임원선거관리규정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사단법인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대전광역시연합회(이하 “대전예총”이라 한다) 조직 및 운영규정(이하 “운영규정”이라한다) 14조에 따라 임원 선출에 대한 선거사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예총 임원의 임기 만료에 따라 개선하거나 임원의 유고에 따라 보선이 필요한 때에는 이 규정의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공정) 이 규정에 따라 선임된 선거관리위원회와 선거관리사무요원은 규정을 준수함으로써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제4조(선출범위) 임원의 선출은 운영규정 제14조 1항의 규정과 이 규정 제17조의 규정에 따른다.

### 제2장 선거관리위원회

제5조(구성) ①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은 수석부회장을 위원장으로 하며, 부회장은 선거관리위원이 된다. 단, 결원이 생기거나 부회장이 선거관리위원이 될 수 없는 경우에는 이사회에서 선거관리위원을 선출한다.

②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은 선거관리위원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의장이 되어 회의 일정 등을 정한다.

③ 입후보자로 등록된 자는 선거관리위원이 될 수 없다.

제6조(선거사무) 선거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예총직원은 선거관리사무 요원이 된다.

제7조(위촉) ① 선거관리위원장은 선거관리위원 및 선거사무요원에게 별표 제1호의 위촉장을 교부한다.

② 위촉된 선거관리위원 및 선거사무요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한다.

제8조(해촉) 선거관리위원회 및 선거사무요원은 당해 선거업무가 완료되면 자연 해산한다.

제9조(선거공보의 발행) ① 선거관리위원회는 입후보자의 사진 및 경력 등을 선거공보로 1회 발행하며 전대의원에게 배포한다.

② 선거공보의 규격, 문안 등 필요한 사항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정한다.

### 제3장 선거관리

제10조(선거권) ① 임원선출을 위한 선거권은 중앙 본회에서 회장의 인준서(임명장)을 받은 협회에서 추천한 자를 총회 대의원으로 한다.

② 대의원 수는 운영규정 17조 제1항의 규정에 따름을 원칙으로 한다.

제11조(대의원 명단제출) ① 회원단체는 총회 개최일 20일전 까지 대의원 명단을 별표 제2호의 서식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② 기한내 제출이 없는 단체는 대의원 추천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며 제출된 대의원은 교체할 수 없다.

제12조(명단공개) 확정된 대의원은 선거인명부에 등재하고 그 명단을 공개하여야 한다.

제13조(선거일자 공시) 임원선출을 위한 총회 개최일(선거일자)을 개최 30일전에 공시하여야 한다.

제14조(선거의 연기) 천재지변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선거를 지정일에 실시할 수 없을 때에는 선거일을 연기할 수 있다.

제15조(후보자 등록) ① 입후보자하고자 하는 자는 총회 개최일 15일 전에 선거관리 위원회에 별표 제3호의 서식으로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후보자 등록 접수 마감일은 예총사무처에 게시하거나 회원단체에 통지하여야 한다.

③ 후보자등록신청서 접수는 09:00시부터 하오 5시까지로 한다.(단, 토요일·공휴일은 제외한다.)

④ 선거관리위원회는 등록신청이 있을 때 즉시 접수하고 별표 제4호의 접수증을 교부한다.

⑤ 등록 순서의 번호는 투표시 기호로 한다.

제16조(공탁금) ① 입후보 하고자하는 자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 금액의 공탁금을 후보자 등록 시 납부하여야 한다.

② 공탁금은 선거관리위원장이 보관하며 당·낙 관계없이 전액 반환하지 아니하며 선거관리를 위한 제비용으로 충당한다.

③ 선거관리비용에 충당한 후 공탁금 잔액은 예총회계에 환입한다.

#### 제4장 선출

제17조(피선거권) ① 지회장의 피선거권은 회원단체 소속의 정회원으로서 해당 회원단체장의 추천을 받거나 직전총회대의원1/5 이상의 추천을 받은 자 이어야 한다.

② 부지회장, 감사는 개선된 총회에서 위임할 경우에는 신임 지회장이 5인 이내의 전형위원회를 구성하여 선출 할 수 있다.

③ 수석부지회장은 운영규정 제14조제1항4호의 규정에 따라 지회장이 지명한다.

#### 제5장 선거

제18조(임시의장) 임원개선을 위한 총회에서 출석이사 중 최 연장자의 사회아래 임시의장을 대의원 중에서 선임한다.

제19조(투표인표시) 선거관리위원회는 대회장 입구에서 대의원을 확인하고 대의원 표찰을 부착하여야 한다.

제20조(감표위원) ① 대의원중 회원단체 각 1인씩, 10인 이내로 정하되 그 수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정한다.

② 감표위원 선임은 회원단체의 장이 구두 추천하고 선거관리위원장이 선임한다.

제21조(소견발표) ① 입후보자는 10분 이내의 소견 발표를 할 수 있다.

② 입후보자의 순위는 입후보자의 등록 기호순서로 한다.

제22조(투표용지) ① 투표용지에는 입후부자의 기호와 성명을 기재하여 별표 제6호와 같이 인쇄한다.

② 투표용지는 사전에 선거관리위원회의 검인을 받아야한다.

제23조(투표) ① 투표는 선거관리위원장의 대의원 호명에 따라 질서 정연하게 실시한다.

② 투표용지의 교부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입회에서 사무요원이 날인하여 교부한다.

제24조(기표) ① 선거인은 투표용지를 수령한 후 지정된 기표소에서 투표용지의 하단에 ○표로 기표하여 투표함에 넣는다.

② 기표시에는 질서유지에 협조하여야하며 기표소가 설치된 장소에는 접근 할 수 없다.

③ 기표의 비밀은 절대 보장 되어야 한다.

제25조(개표) ① 개표는 임시의장과 선거관리위원장의 책임 아래 감표위원이 총 투표수를 확인하고 입후보자별로 득표를 집계한다.

㉔ 기표된 투표용지 및 선거관리관계 문서는 선거일로부터 6개월간 보관하여야 한다.

제26조(당선확정) ① 임시의장은 개표가 완료된 후 별표 제7호의 집계 표를 확인하여 후보자별 득표현황을 발표하고 당선자를 공표한다.

② 운영규정 제17조의 정하는 바에 따라 투표인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자를 결정한다.

③ 전2항의 과반수를 득표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다 득표순 2인을 후보자로 2차 결선투표를 실시하여 다 득표자를 당선자로 결정한다.

제27조(당선효력) ① 임원 당선자는 당선 공표 즉시 임원으로서의 자격을 취득하며 당일 총회 중 미결 안건을 의장으로서 처리한다.

② 임기만료일은 운영규정 제12조의 규정에 정한 임기가 만료되어 임원 개선을 위한 정기총회에서 임시의장을 선출할 때까지로 한다.

제28조(당선인통지 및 공고) 선거관리위원장은 표결결과 당선인에게 지체 없이 당선통지서를 서면으로 발송하여야 하며 당선인의 성명을 공고하여야 한다.

#### 제6장 보칙

제29조(규정준용) 이 규정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통상관례에 따르거나 선거관리에 관한 법령을 준용한다.

제30조(위임내규) 이 규정을 시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은 선거관리위원장이 내규로 정한다.

-부칙-

-이규정은 예총 간사회에서 통과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2011. 3. 16 이사회에서 임원선거관리규정 개정.

-부칙-

이 규정은 2014. 11. 21 이사회에서 개정 의결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17. 7. 10 이사회에서 개정 의결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19. 1. 14 이사회에서 개정 의결된 날로부터 시행한다.